



새 법령

new laws
and
ordinances



해외이주법

[시행 2018.4.14.] [법률 제15430호,
2018.3.1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사업장 이전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 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 2018.9.14.] [법률 제15433호,
2018.3.1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통일부장관이 국민들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일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

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통일부장관이 국민들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조 제3호 및 제6조의4 신설).
- 나.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3조의3 신설, 제4조).
- 다. 통일교육기본계획에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등을 새로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제6조).
- 라.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5 및 제6조의6 신설).
-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6조의7 신설).

바. 정부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제3항).

사.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 제6항 신설).

아.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함(제11조).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 2018.9.14.] [법률 제15459호, 2018.3.1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에서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상하종속관계 형성으로 인해 공사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공사감리비 지급절차를 개선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 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예치된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44조 제6항 및 제7항).
- 나.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54조 제1항 제2호가목).
-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함(제63조 제5항).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8.9.14.] [법률 제15458호, 2018.3.1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에게 후분양주택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주택후분양제를 정착시키고, 도시계정에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비용을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체 등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8.9.14.] [법률 제15439호,
2018.3.1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예술영화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예술영화·독립영화로 함께 규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영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 2018.6.14.] [법률 제15429호,
2018.3.1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위협·무기를 사용한 훈련 등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한 통항 정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또한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발하는 정선(停船)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안보 위기 상황에서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한 정선(停船)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을 3억원으로 인상하고, 정선(停船)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을 1억원으로 인상하여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9.14.] [법률 제15452호,
2018.3.1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

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등이 청소년대상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소속 강사나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이 설치하는 교육문화회관, 어린이회관 등이 포함되어 그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아동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8.3.13.] [법률 제15470호, 2018.3.1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해 물품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미비된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및 이행여부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정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하여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 및 제83조의2 신설).

나. 한국소비자원장은 위해 물품등과 관련하여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여부 및 그 이행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청을 제출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신속히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제46조 제2항 및 제52조 제3항·제4항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9.14.] [법률 제15451호, 2018.3.1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나, 문제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국가가 불법 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수리 필요성과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불법 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동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3 신설).

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규정함(제10조 제3항 및 제19조의2 제4항 신설).

다.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제21조 제2항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자보건법

[시행 2018.9.14.] [법률 제15444호, 2018.3.1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고위험 임신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 부부

의 알권리 보장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난임시술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이나 질병 발생 시 의료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을 상향하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산후조리업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고위험 임신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6 신설).
- 나. 난임시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제11조의3 제5항).
-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산후조리업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함(제15조의2 제2호).
- 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또는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신설)

마.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이송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함(제27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 등).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유재산법

[시행 2019.3.14.] [법률 제15425호, 2018.3.1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형태·규모·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비상장 물납증권을 매각 처분할 때 대부분은 물납자 본인이나 납세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매각되고 있는데 일종의 탈세 또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 규정된 국세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물납증권의 저가매수 금지 대상을 물납한 본인뿐만 아니라 물납자의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세물납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유희·저활용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토

지를 조성하는 행위도 추가하되, 토지조성에 관하여는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가 수행하는 위탁 개발에 한정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건축행위 뿐만 아니라 위탁 개발에 한정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도 추가함으로써 일반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8.3.9.] [법률 제15424호, 2018.3.9.,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구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그동안의 인구 변동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인구편차의 허용범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증원된 690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 선거구역표를 조정함(별표 2).
- 나.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

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총정수표를 조정함(별표 3).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8.3.2.] [법률 제15420호, 2018.3.2.,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시행할 때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범국민적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